

2016년 3월~2019년 2월

---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  
과업주문(지시)서**

---

**강 남 구**

# 목 차

I	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안내	1
II	사업설명서	2
III	용역의 특수조건	3

본 과업내용서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과업지시서로서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지정신청 및 용역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1.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 안내

## 1.1 목 적

본 용역은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강남구청장이 발주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발주기관, 용역관리자 등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지정신청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2 유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는 이 과업안내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본 과업지시서 및 지정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 내용상 오기 등의 사유발생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다.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타 단체(업소)에 재 위탁 할 수 없다, 단, 동물사체의 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문 업소에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사체의 위탁 처리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전문 구조인력 및 수의사에 대한 증빙서류,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보유 내역서, 보호시설 평면도, 비치기구·장비명 및 수량 현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마. 동물보호법 및 조례 기타 법령 그리고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미 제출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된다.
-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 중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 발주자는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가 본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아.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납되지 않는다.
- 자. 본 지침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강남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 1.3 용역의 범위

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

: 유기동물의 단속·포획·운반·치료보호·계류·사체처리·광견병예방접종(분양시)·기타관리를 포함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사항으로 한다.

나. 대모산 등지에 야생화 되고 있는 방견의 단속

다. 기타 발주자와의 협의한 사항 등으로 한다.

## II. 사업설명서

### 2.1 사업목적

본 「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과 관련된 사항을 「동물보호법」 정신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동물 보호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임

### 2.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

나. 발주자 : 서울시 강남구청장

다. 용역범위 :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특수조건 참조)

라. 용역기간 : 2016. 03. 01 ~ 2019. 02. 28

마. 비용지급 : 매월 발생하는 유기동물수를 계약된 단가로 합산하여 익월초에 지급

### III.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특수조건

강남구청장과 위탁사업자의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련된 사무에 관한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이 업무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거 강남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유기동물”이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동물로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의미한다.

#### 제3조(위탁범위)

-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단속, 포획·인수, 보호관리, 반환조치, 기증·입양 등 사후 조치
  2. 관내 공원 및 대모산 등지에 야생화 되고 있는 방견의 단속
  3.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보호(사육)와 치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
  5.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사육)와 치료
- ② 위탁사업자는 기타 강남구청장이 유기동물 단속 및 보호·관리에 필요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그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4조(위탁기간)

용역기간은 2016. 03. 01 ~ 2019. 02. 28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업수행의 기본방침)

- ① 위탁사업자는 위탁받은 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탁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참가자격)

- ① 신청대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8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로서
  - 1) 동물병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② 위탁사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에 의거 보호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응모할 수 없다.
- ④ 지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1부

-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인감동장(사용인감계첨부) 지참
-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4) 유기동물 보호관리 계획서 1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포함)
- 5)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추가로 필요하는 서류 1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동물보호단체등록증 등
- 6)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사업신청자(계약 체결후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 단속)

- ① 위탁사업자는 강남구청장 또는 주민으로부터 관내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은 즉시 출동하여 이를 포획, 보호·관리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즉시 게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포획일시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시부터 포획까지의 처리시간은 평일, 공휴일 모두 주간(09:00~20:00) 6시간 이내, 야간(20:01 ~ 익일 08: 59) 10시간 이내로 하고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위탁사업자에게 있다. 또한 긴급사항 발생시는 즉시(3시간 이내)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365일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탁사업자는 관내 공원 및 대모산 등지에 야생화 되고 있는 방견의 단속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속 일정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③ 강남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위탁사업자의 귀책으로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 강남구청장은 즉시 위탁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나 피해 발생시 위탁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유기동물의 보호관리)

- ① 위탁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포획·단속한 유기동물을 위탁사업자가 관리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즉시 보호 조치한다, 이때 유기동물 보호소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동물보호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내에서 보호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② 위탁사업자는 유기동물을 강남구청장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일로부터 20일(보호 공고기간 10일, 입양대기기간 10일)이상 보호관리 하되 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에 따라 적정하게 사육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유기동물의 처분)

- ① 위탁사업자는 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보호기간(10일)이 종료한 유기동물에 대하여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의 건강상태와 질병, 부상의 정도에 따라 수의사의 판단 하에 인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기증·분양 받는 자의 명단을 기록·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반환, 기증, 분양이 되지 않으면 “법”제22조에 의거 유기동물의 건강상태와 질병, 부상정도에 따라 수의사의 판단하에 인도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
- ② 위탁사업자는 제①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질병,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기간 종료 전에 인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기간 중에 해당동물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나타난 경우 소유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유기동물을 반환토록 한다.

###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 ① 위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강남구청장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법” 및 “조례”등 관계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 및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양관리 및 지도감독)

- ① 위탁사업자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유기동물에 대하여 “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적정한 사양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 ② 강남구청장은 “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위탁사업자가 보호·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필요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강남구청장은 즉시 위탁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나 피해 발생시 위탁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 (보고서 제출과 기록관리)

- ① 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동물 포획, 인수 내역 : 붙임 제1호 서식
  2.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적보고 및 당월 보호조치 세부 내역서 : 붙임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3. 유기동물의 개체별 기록카드 : 붙임 제3-1호 서식
  4. 유기동물의 반환내역서 : 붙임 제4호 서식
  5. 입양상담 신청서, 유기동물의 기증, 입양 내역서 : 붙임 제5-1,5-2호 서식
  6. 청구서 : 붙임 제6호 서식
  7. 폐사체 처리내역서 : 붙임 제7호서식

## 제13조(용역비와 정산)

- ① 용역비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수송비, 치료 및 예방접종비, 사료비, 관리비,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②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비는 유기동물 1마리당 계약단가(160,000원)로 한다.
- ③ 용역비는 각각의 동물 1마리를 1건으로 하나 유기동물 용역비 지급시 한배새끼의 경우 한배새끼를 1건으로 하여 당월 처리건수를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며 붙임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사업자가 강남구청장에게 청구하고, 강남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사업자의 계좌로 비용을 지급한다. 단, 계약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한해 위탁사업자가 보전하고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시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강남구청장은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때에는 그 해지일 까지 위탁사업자가 처리한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제14조(용역비의 지급제외 등)

- ① 구조된 유기동물 중 견치(송곳니)가 자라지 않은 동물은 처리 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강남구청장은 소유자에게 해당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 용역비 산정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에 의한다.
- ③ 강남구청장은 위탁사업자가 본 계약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등)

- ① 위탁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남구청장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위탁사업자는 이를 강남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 ① 강남구청장 또는 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강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 1. 위탁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2. 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강남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보호동물 학대 및 유기동물을 실습·식용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위탁사업자가 법 및 조례에 의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될 때
  - 5. 위탁사업자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 강남구청장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6. 위탁사업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 ③ 강남구청장은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탁사업자의 직원에 대하여는 위탁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7조(사업의 지도·감독)

- ① 강남구청장은 사업과 관련한 위탁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 강남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위탁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강남구청장의 소속직원 또는 강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위탁사업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강남구청장은 위탁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강남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 ① 이 계약은 서명일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한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②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강남구청장 소재지로 한다.
-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02. 01 ~ 2019. 02. 28으로한다.

2016년      월      일

용역발주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장

위탁사업자 :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업주

【서식 제1호】

## 유기동물 포획·인수 보고서

본 사업자는 귀 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포획·인수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보고합니다.

개 체 번 호			
보 호 장 소			
포 획 일 시			
포 획 장 소			
신고인 성명		연 락 처	
신고인 주소			
보호 동물	축종(품종)	추정연령(체중)	( kg )
	성 별	우/♂	모 색
	건강상태		
	특 징		

2016 년    월    일

사업기관명:

대표자:

확인자 : 강남구 지역경제과

성 명 :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3-1호】

**보호동물 개체관리 카드(제출용)**

1. 자체관리번호				APMS관리번호		
2. 구조정보	신고일				구조일	
	신고자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구조장소	
	구조 당시 정황 기재	-최초 발견장소, 최초신고자, 개체상태 등				
3. 동물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 수 / 미상
	나이 (추정)		중성화	O / X / 미상	체중	
	특징					
4. 보호동물 사진						
<p>보호동물 사진1. [인수당시 근거리사진] ※구조장소, 일자, 신고자 등이 기재된 철판(화이트보드, 종이 등)과 함께 촬영(되도록 위치확인이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 ※별첨가능</p>				<p>보호동물 사진2. [인수당시 원거리사진] ※구조장소, 일자, 신고자 등이 기재된 철판(화이트보드, 종이 등)과 함께 촬영 ※되도록 위치확인이 가능한 장소에서 촬영</p>		
<p>보호동물 사진3. [입소사진] ※자체관리번호 및 구조일자 등이 기재된 철판(화이트보드 등)과 함께 촬영</p>				<p>보호동물 사진4. [처리사진: 보호종, 주인인수, 분양, 안락사, 자연사 등] ※자체관리번호, 구조일자 및 처리일자 등이 기재된 철판(화이트보드 등)과 함께 촬영 ※ 보호중인 개체는 계류시설에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처리일자는 입소일자를 기재함</p>		

구조자 : 서명  
진료 수의사 : 서명

【서식 3-2호】

##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일지(보관용)

개체관리번호 2012-

진료의뢰 (신고) 내용	신고일자		인수자	
	유기동물 종류		두 수	
	의뢰(신고)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명
	발견·의뢰 경위 사진 및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			
	“발견당시 사진”			
보호 및 진료사항	진료사항(장기 진료시 별지 첨부 기록)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인계자)	인수자 연락처
	“유기동물처리 사진”			

2016년    월    일

보 고 자 : (인)

확인수의사 성명 : (인)



# 서식 4

# 유실동물 반환 신청서

반환 동물	종류( 품종 )		공고번호( APMS )	
	성 별		관리번호( 보호센터 )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분실사유:			
소 유 자 교 육	<b>세부 내용</b>			<b>소유자 확인</b>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반환 후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하고 등록신청서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할 것( fax )) 미등록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고 인식표(주인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비닐봉투 등을 휴대하여 배설물이 있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 등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p>본인은 상기 동물의 소유자로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동물의 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인수자) :</p> <p>○ ○ 구청장 귀하</p>				
인계내역	인계일자		인계자	○○보호센터 (서명)
비고	1. 사진 첨부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제외)			

## 유기동물 입양 상담 신청서

분양(기증) 동물	종류(품종)		공고번호(APMS)	
	성        별		기타특징	
입양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입양신청사유			
<p>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받은 유기동물에게 또 한번의 삶을 선물하는 값진 일이기도 하지만, 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읽고 신중히 답해주세요</p>				
<b>사전고려항목</b>				<b>답변</b>
1. 유기동물을 입양하겠다는 결정에 가족 모두가 동의하셨습니까 ?				
2. 입양된 동물을 주로 돌보는 사람(대소변 치우기, 산책, 목욕 등)은 누구입니까 ?				
3. 입양동물은 재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대행수수료(10,000원)는 입양자 부담입니다. 동물등록에 동의하십니까 ?				
4. 앞으로 이사,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될 경우가 되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5. 입양동물이 나이들거나 병이 걸릴 경우에도 끝까지 반려동물로서 돌봐주시겠습니까 ?				
6. 가족 중에 반려동물에게 알려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 입양된 동물이 화장실 교육이 안 되었거나 밤에 짖는 등 문제행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 반려견은 주기적으로 산책을 해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몇 번 반				

<p>려견과 산책이 가능하십니까 ?</p>	
<p><b>입양신청자 상세 정보</b></p>	
<p>귀하의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p>	<p>           단독주택 (    )            아파트(    )            다세대/빌라(    )            오피스텔(    )            기타(    )         </p>
<p>입양동물과 함께 살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p>	
<p>           현재 또는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동물을 몇 년간 키웠는지            적어주세요         </p>	
<p>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동물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동물 입양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일 : 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p>	





【서식 7호】

## 폐사체 처리내역서

본 사업자는 유기동물 폐사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기록합니다.

처리 일자 :

처리 기관 :

처리 내역

총 건수	중량	개체관리번호(모두 나열)	비고

인 수 자 : (인)

인 계 자 : (인)